



보 거푸집 조립 작업 중 추락



시민교육문화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(형틀목공)가 1층 보 하부 거푸집 상부에서 측면거푸집 조립 작업을 하던 중 실족하여 1층 콘크리트 바닥(4m)으로 추락하여 사망



발생 원인

- 추락방지조치 미실시
 - 높이 2m 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거푸집 조립작업 수행 중 비계 미설치,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작업 수행
- 안전모 미착용

TIP

안전작업

1 추락방지조치 철저

- 높이 2m 이상에서 보 거푸집 조립작업 시에는 작업발판과 안전간간이 설치된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 실시

2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

-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 실시
- 안전모 착용 및 턱끈 체결 철저



안전대 부착설비

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(개구부 등의 방호조치)





보 거꾸집 조립 작업 중 추락

거꾸집조립작업 시에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있는 비계를 사용하세요!

